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평 남 의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3월 27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현재 서울시 산하 발주부서가 물품제조·구매 또는 공사에
적합한 특정기술 즉, 특정제품과 특정공법을 선정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위원 위촉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정기술의 선정이 공무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명확치 않은 등 지금의 규칙으로는 특정기술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기구를 운용할 때는 조례에 근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현행 규칙이 아닌 조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규칙에 비해 심사 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특정기술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기술 10억원 초과 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수를 과반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에 심사항목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실사가 가능토록 하여 현장적용성 평가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들 중에는 특정기술에 의해 공사 설계나 시공이 결정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공법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그 공법을 소유한 업체가 그 공사 대부분을 맡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수백억에 달하는 공사가 특정기술 하나로 설계나

시공업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기술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어 선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의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전문적 평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특정기술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